

#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

제 개 개 개 개 개	정 2004.11. 8. (규칙 제215호) 정 2006. 5.30. (규칙 제241호) 정 2007. 1. 8. (규칙 제261호) 정 2009. 2.18. (규칙 제286호) 정 2010. 3.19. (규칙 제304호) 정 2012. 9.17. (규칙 제342호)	개 개 전문개정 개 개 개	정 2013.10.25. (규칙 제370호) 정 2014.10.30. (규칙 제388호) 2015.10.26. (규칙 제401호) 정 2016. 6.23. (규칙 제413호) 정 2016.10.31. (규칙 제420호) 정 2018. 2.27. (규칙 제447호)
----------------------------	--	-------------------------------	--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사행성오락”이란 마작·화투·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목적으로 하는 오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규 임용 및 승진 시 별지 제17호서식의 청렴

서약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그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 임직원은 제1항을 위반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다른 임직원에게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이사장은 제1항을 위반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이 원할 경우 희망부서 전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의2(직위·직무별 청렴행동)** ① 임원 및 관리직원(1급 및 2급 직원을 말한다)이 지켜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 6과 같고, 소속 직원의 청렴행동수칙은 별표 7과 같다.

② 소속 직원의 주요 직무별 준수해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 8과 같다.

③ 임직원은 청렴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이사장은 임직원의 청렴행동수칙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
3. 5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4.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5. 퇴직한 후 자신(퇴직예정직원에 한함)의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
6.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8.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의2(퇴직직원의 공단 출입제한 등)** ① 임직원은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직원으로 하여금 그와 이해관계 있는 허가·단속·계약체결 등에 관련된 현장에 출입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퇴직직원이 공단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체로 취업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당해 퇴직직원의 공단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6조의3(문서 반출 제한)** ① 임직원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예정자 또는 퇴직직원의 문서(공개문서는 제외한다) 외부 반출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 위반하여 무단으로 반출된 문서에 대하여 즉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특혜의 배제)**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

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에서 인사·예산에 권한을 가지거나 지휘·감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친족이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①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사전에 장소·대상·사유·일시 등을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를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 등을 제시한 후 출장사유를 설명하고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와 사무실, 민원실 등 공개된 장소 이외에서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업무 관련 사안이나 업무집행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서는 아니 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사적인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2. 직무관련자와 식사나 여행을 하는 것
3. 직무관련자와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것
4. 직무관련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⑤ 제3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부득이한 접촉 시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제의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책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동창회, 친족 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관련자와 부득이하게 접촉한 경우
4. 직무관련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5.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제7조의3(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공단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4(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공단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의5(직무관련자와의 출장 제한)** ①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사전에 장소·대상·사유·일시 등을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직무관련자를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출장사유를 설명하고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초청하는 국외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출장동행을 의뢰하는 경우
  2. 해외기관 초청교육, 학술발표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 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외출장의 경우 공단 공무국외여행지침 제7조에 따라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공무국외여행심의서를 작성하고 총무부에 제출하여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등을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임직원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授受) 금지 등

**제12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위의 사적 이용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내·외부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전관예우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공단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다만,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가는 행위

②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의거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돋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공원구역 조정 관련 정보

2. 공원계획 변경 관련 정보

3. 판매·공사·용역·구매 등 각종 계약관련 정보

4. 용지보상, 행위허가 등 업무상 취득하게 되는 토지 등 소유자 개인정보

③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① 임직원은 차량·선박·항공기 및 각종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지적

재산권 등 공단 소유의 재산과 공단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 중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한 비위행위 적발 시 그 사용·수익 비용의 전액(공용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을 환수 조치한다.

**제1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

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공단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입찰공고 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에 입찰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입찰공고 시 공단 입찰 및 계약 관련 신고제도(국민신문고, 핫라인 등)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 4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0조(외부장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장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장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장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공단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장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장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장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단 전자결재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장의등이 공정한 직

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이사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3조(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오락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어떠한 경우라도 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다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 한 경우

2. 친족이나 동창회, 향우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정보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음란 사이트 접속·불건전한 채팅·도박·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업무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26조(임직원의 상호 존중)** ①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③ 임직원은 동료를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달리 대해서는 아니 되며 따뜻한 관심으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하는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

④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장점과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격려함으로써 밝고 화목한 직장을 만들어야 한다.

**제27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협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 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제 5 장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제29조(임원의 직무청렴계약)** ① 공단 임원은 재직기간 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의무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명시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② 상임이사의 직무청렴계약 당사자는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과 감사의 경우는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단, 환경부장관이 계약당사자가 될 경우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은 인사담당부서에서 한다.

**제30조(대상임원)** 이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계약의 대상임원은 이사장,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가 되며, 비상임이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1조(의무준수 기간)** 직무청렴의무 준수기간은 공단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32조(청렴의무 사항 및 위반 시의 제재)** ① 임원은 직무수행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 의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를 진다.
- ② 임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지행위 및 위반 시의 제재사항, 소멸시효 등은 직무청렴계약서에 명시한다.

- 제33조(청렴의무 위반의 심의)** ① 청렴의무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 등은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이사회는 비상임이사가 과반수이상 출석해야 하며 비상임이사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 제 6 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34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5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3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5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35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7조(징계)** ①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처분기준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되어, 별표 1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

야 하며, 제36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그 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  
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  
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  
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  
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  
하여 별지 제9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  
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  
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 7 장 보 칙

- 제39조(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임직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임용, 승진 등 공직생애주기 해당자는 각 단계 별 별표 4에 따른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에 따라 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 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 ④ 부패취약분야 종사자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패취약분

야 종사자의 업무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공직생애주기 해당자와 부패취약분야 종사자는 대면교육을 포함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임용자와 부패취약분야 종사자는 임용·전보일로부터 3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청렴서약 이행 여부를 포함한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제43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 반영, 표창, 해외연수 지원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강령은 2015. 10. 26.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10.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37조제1항 관련)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1. 적용대상 :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2. 금지·제한 사항별 처리기준

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위 반 사 항	처분기준	
	경미한 사항	중한사항
<input type="radio"/>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제5조) <input type="radio"/>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6조) <input type="radio"/> 특혜의 배제(제7조) <input type="radio"/>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제7조의2) <input type="radio"/>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제7조의3) <input type="radio"/>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제7조의4) <input type="radio"/>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8조) <input type="radio"/>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9조) <input type="radio"/>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10조) <input type="radio"/> 투명한 회계관리(제11조) <input type="radio"/> 이권개입 등 금지(제12조) <input type="radio"/> 직위의 사적 이용금지(제13조) <input type="radio"/>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4조) <input type="radio"/> 전관예우 등 금지(제15조) <input type="radio"/>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6조) <input type="radio"/>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17조) <input type="radio"/>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18조) <input type="radio"/>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제19조) <input type="radio"/>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0조) <input type="radio"/>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20조의2) <input type="radio"/> 금전의 차용 금지 등(제21조) <input type="radio"/>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제22조) <input type="radio"/> 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의 금지(제23조) <input type="radio"/>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제24조) <input type="radio"/>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제25조) <input type="radio"/> 임직원의 상호존중 위반(제26조) <input type="radio"/>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제27조) <input type="radio"/> 성희롱 금지(제28조)	주의 · 경고	징계

- ▶ 경미한 사항: 비위정도가 경미하고 과실인 경우
- ▶ 중한 사항: 비위정도가 중한 사항으로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인 경우

## 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비 위 유 형	수수 행위						
의례적인 금품등 수수의 경우	수동	감봉 · 정직 · 강등 의결요구	강등 · 해임 · 파면 의결요구	해임 · 파면 의결요구	파면 의결요구		
	능동	정직 · 강등 · 해임 의결요구	해임 · 파면 의결요구	파면 의결요구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 · 강등 · 해임 의결요구	해임 · 파면 의결요구	파면 의결요구			
	능동	강등 · 해임 · 파면 의결요구	파면 의결요구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강등 · 해임 · 파면 의결요구	파면 의결요구				
	능동	해임 · 파면 의결요구	파면 의결요구				

[별표 2](제18조제3항제2호 관련)

##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 조의금을 대신 하는 화환 ·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 · 단서 및 제3호 본문 · 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 · 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 ·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3](제20조제1항 관련)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1. 임직원 사례금 상한액

- 가.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임직원이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제1호가목에 따른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공단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 「여비규칙」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4] (제39조제3항 관련)

##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기준

교육대상	교육분야	교육방법	교육시간	비고
신규 임용자	공직자 행동강령, 기관별 부패취약 업무에 대한 초임 공직자 대응방안, 공직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 등	이사장 및 행동 강령책임관 특별 교육, 교육훈련 기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	임용 후 1년 이내 연 5시간 이상	
3급 이하 승진자	공직자 행동강령, 중간관리자의 바람 직한 근무자세 및 역할, 주요 부패사례 및 슬기로운 대처법 등	이사장 및 행동 강령책임관 특별 교육, 교육훈련 기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	승진 후 1년 이내 연 5시간 이상	대면 교육 포함
2급 이상 고위직 승진자	노블레스 오블리주 함양, 공직자의 사회적 공헌, 청렴리더십 확립 등	이사장 특별교육, 교육훈련기관 집합 교육 및 사이버 교육 등	2급 이상 승진 후 1년 이내 연 5시간 이상	

[별표 5] (제5조제8항 관련)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1. 판단기준

- 가. 법령, 규정, 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 다.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 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 바.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 2. 부당지시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

- 가. 규정 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 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 다. 현지 조사·확인 등 조사, 점검, 심사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기관) 등을 포함
- 라. 점검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 마. 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휴일 등에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 바.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 선정, 계약조건 및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
- 사.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예산을 해당 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토록 지시
- 아. 각종 단체 지원, 위임·위탁 등 권한부여 업무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 자. 특정직원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시
- 차. 근무성적 평가를 이유로 협박성 회유 또는 부당한 지시
- 카. 직무관련자에게 청탁·알선 또는 편의제공을 요구하도록 지시
- 타. 상급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 파.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 하. 사업장 등에 자신의 외부강의를 주선하도록 지시

[별표 6] (제5조의2제1항 관련)

## 임원 및 관리직원의 청렴행동수칙

1. 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2. 관리자로서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4. 업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 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5.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6. 관용차량, 관사,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7.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직원이나 인턴, 공익근무요원 등을 동원하지 아니한다.
8. 외유성 출장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출장을 가지 아니한다.
9.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등 사적 업무를 보지 아니한다.
10. 하위직원 및 외부 업무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별표 7] (제5조의2제1항 관련)

## 직원 청렴행동수칙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과 내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3.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4.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한다.
5.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아니한다.
6.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보안사항과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7.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8.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아니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지 아니한다.
9.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0.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별표 8] (제5조의2제2항 관련)

## 인사분야 소속 직원 청렴행동수칙

1. 근로자 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지 아니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2. 주요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자연·혈연·학연·종교·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아니한다.
4.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 받지 아니한다.
6.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 회계분야 소속 직원 청렴행동수칙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과 내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주요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회계관련 업무처리의 증빙서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적으로 파기하지 아니한다.
4. 회계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사적인 편의를 위하여 특정거래처를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아니한다.
5.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6. 회계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여 사적인 재산상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7. 회계관련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 인허가분야 소속 직원 청렴행동수칙

1. 인허가 신청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 열람하지 아니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2. 주요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쉬운 말로 충분하게 설명한다.
4. 민원인에게 필요 이상의 방문을 요청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인허가지 방문도 하지 아니한다.
5. 인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 등으로부터 금품 · 향응 · 편의 등을 받지 아니한다.
6. 혈연,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아니한다.

## 공사관리분야 소속 직원 청렴 행동수칙

1. 공사관리에 있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직무수행 중 혈연,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특정인(업체)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4.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5.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절차를 적극 안내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에게 특정인(업체) 등을 추천 · 소개하지 아니한다.

## 구매계약분야 소속 직원 청렴행동수칙

1. 공단의 구매 · 제조 · 용역 · 공사 등의 제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있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다.
2.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3. 계약상대자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논의하거나 청탁을 받지 아니한다.
4. 혈연 · 학연 · 지연 · 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5. 계약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 · 무형의 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6. 계약 입찰 공고 전까지는 계약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 탐방 · 예약 · 자원봉사분야

### 소속 직원 청렴행동수칙

1. 자연자원의 보전을 인식하고 공공서비스 정신으로 이용자에게 최선의 생태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2. 제반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언제나 정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신청절차 등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성의를 다해 안내한다.
4.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금전이나 향응, 각종 편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5.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절대 누설하지 아니한다.
6. 특정인(단체)에게 예약 순서를 바꿔주는 등 일체의 특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5조제2항 관련)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제5조제3항 관련)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상담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	----	--	--------

지시받은 사항	
------------	--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	--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제9조제1항 관련)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명	직책
	소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제18조제4항 관련)

##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제20조제2항 관련)

##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b>유의사항</b>			
<p>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p> <p>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20조의2제1항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	-------------------------------------

[ ] 강의, 강연	[ ] 기고
활동 유형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 외부강의 등 주제

##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_\_\_\_\_

한국어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제21조제2항 관련)

##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주소			

### 신고사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별지 제8호서식] (제38조제1항 관련)

##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 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四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제20조제7항 관련)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청구인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및	받은일시
처리내역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제38조제5항 관련)

##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별지 제11호서식](제38조제5항 관련)

##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별지 제12호서식] (제38조제6항 관련)

금품등 관리대장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제35조제1항 관련)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제34조제1항 관련)

##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 청 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00년 상반기/하반기, 기관명)

###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 : 기준일 현재 총 현원(상반기 : 6. 30. / 하반기 : 12. 31. 기준)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 본부)

소속		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 제·개정 내역

명칭			
제정·개정	제정 ( ), 개정 ( )	일자	200 . . .
주요 내용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첨부①)

## 2. 행동강령 이행환경

###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 민원마당 →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 회

###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 여 · 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 회

###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관련 파일 제출(첨부②)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계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내 부					
외 부					

### 3. 추진실적

#### 가.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

상담 분야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총계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②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③ 특혜의 배제			
④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⑤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⑥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⑦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⑧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⑨ 알선 · 청탁 등의 금지			
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⑪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⑫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⑭ 금전의 차용·대부금지 등			
⑮ 경조사의 통지			
⑯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⑰ 투명한 회계관리			
⑲ 청렴한 계약의 체결 · 이행			
⑳ 기타			

## 나. 외부강의등 신고 현황

구 분	총 계	강의·강연	발표·토론	심사·평가 자문·의결	기 타
신고건수	건	건	건	건	건
신고인수	명	명	명	명	명
외부강의등 시간 (누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대 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 1. 소속 기관 임직원의 신고실적도 포함
- 2. 60분까지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 등으로 기재
- 3. 동일인이 수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1인으로 계산

## 다. 금품등 반환신고 현황

### ○ 신고 현황

구 分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수수 금지 금품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관련)			

## ○ 처리 현황

구분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현황

위반건수(건)			자체적발률(%)
계 (A+B)	자체적발건수 (A)	외부기관통보건수 (B)	$\frac{A}{A+B} \times 100$

#### 4. 행동강령 실천의지

## 가. 행동강령 교육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명)	주요내용	교재 제작 여부
누계	—	—		—	—
1	2008. 4. 7.(월)	대강당	457	행동강령 조문별 위반 사례 교육	○ (행동강령 조문별 사례집)
2					
:					

## 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구분	점검 기간	점검 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누계	-			-	
1	2008. 4. 7.(월)~11.(금)	5일	7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사용 여부	1
2					
:					

## 다.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 수범 사례

- 수상 내역

수상명	수상 일시	수상 내역	비고

- 홍보 실적

구분	홍보매체	홍보 횟수	홍보 내용	비고
계				

## 5.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처리 내역

※ 위반행위자 별로 별도 작성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 -
소속		직위	
직급	[ ] 임원 [ ] 관리자 [ ] 직원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 ( )년 ( )월 [ ] 진행 중
3. 위반행위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 [ ] 감봉		
처리결과	[ ] 견책 [ ] 불문경고 [ ] 경고·주의 [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 내부공익신고 [ ] 진정/신고 [ ] 자체감사 [ ] 기타(직접기재: ) 외부기관 [ ] 상급 감독기관 [ ] 감사원 적발 [ ] 검찰청 [ ] 경찰청 [ ] 국무총리실 [ ] 국민권익위원회 [ ] 기타(직접기재: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 특혜의 배제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 금전의 차용·대부금지 등 [ ] 경조사의 통지 [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 투명한 회계 관리 [ ] 청렴한 계약의 체결·이행 [ ] 기타(직접기재: )	
	내역	○ 6항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 6. 기타

○ 운영상 애로사항

○ 개선조치 요청

○ 건의사항 등

[별지 제16호서식] (제37조제3항 관련)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위반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호	위반내역

###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청 렴 서 약 서

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으로서 평소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국민들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하나,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길잡이로서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 ◆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
- ◆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 하나, 나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공사 생활에 솔선수범 하겠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서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 ◆ 하나, 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등도 받지 않는다.
- ◆ 하나, 나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 ◆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서명)